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82

발의연월일: 2020. 12. 17.

발 의 자:이학영·김경만·김성환

김정호 · 박홍근 · 송영길

신정훈・윤준병・이규민

이동주・이성만・이수진

이장섭 · 정태호 · 최인호

홍성국 의원(16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 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한다는 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의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산 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의 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
- 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위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시·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 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산업 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 시설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공 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 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해당 지역경

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을 위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등

-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 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 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예상 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 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경우
 -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대규모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으로 인해 주된 산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어 긴급 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충격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 지역의 주된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 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3. 선제대응지역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여부
-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 3. 국내 판매·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 안정 지원
- 5. 그 밖에 지역산업위기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

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중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은 해제된다.

- ⑦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의 지역
 -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

-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지역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

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3.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여부
-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모두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충족하는 경우에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 정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역경제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를 준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 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0 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이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 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해 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되었다 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도 지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 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 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제출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 위기지역계획을 수립·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자금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지역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기술· 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

- 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 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 제21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의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0조제7항에 따른 운영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 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 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 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